

1.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본 학회지의 투고범위는 화장품관련 범위의 보문 (Original article), 총설(Review article), 단신(Short Communication), 속보(Rapid Communication), 논평 (Comment) 등으로 한다.
2.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이 담당한다.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,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.
3. 심사결과는 “채택 가”와 “채택 불가”로 판정하고, 채택 가의 경우는 “무수정”, “수정 후 채택”,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구분한다.
 - (1) “채택 가” 중 “무수정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채택한다.
 - (2) “채택 가” 중 “수정 후 채택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 위원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.
 - (3) “채택 가” 중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.
4.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.
5.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“수정 후 채택” 또는 “수정 후 재심”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- (1)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
 - (2)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,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
 - (3) 그밖에 수정,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6.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“채택 불가”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.
 - (1)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
 - (2)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
 - (3)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7.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8.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9. 심사위원 중 1명이 “채택 가”, 다른 1명이 “채택 불가”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1, 2 심사 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, 제3 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. 이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이 “채택 가”나 “채택 불가”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, 만일 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10.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 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단,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 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11.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 받은 논문을 심사하고,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
12.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.
13.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.
14. 본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 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게재 예정 사항을 알린다.

■ 연구윤리 관련 규정

(2021.03.02 시행)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

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등에 대해 적용한다.

제3조 (저작권)

저자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항 및 모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.

- (1) 저자는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 원작(original work)이 며 전체 혹은 부분으로 다른 매체에 게재된 바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. 또한 다른 매체에 투고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. 단 초록 형태는 예외로 한다.
- (2) 일부가 타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본 학회지 상의 게재에 대한 허가를 해당 단체로부터 받아야 하고, 허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3) 본 학회지에 게재가 수락된 논문의 일부 내용을 타 매체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본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(4)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,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.

제4조 (연구자의 윤리)

- (1)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. 연구자의 윤리 의식은 아이디어의 도출, 연구비 지원, 연구 결과의 출판,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.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‘연구부정행위’를 하지 않아야 한다.
 -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 ‘위조’ 행위
 - ② 연구 재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 하

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,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‘변조’ 행위

- ③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‘표절’ 행위
- ④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,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과학적,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 행위
-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- ⑥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(대한임상신경생리 학회 연구윤리 규정)
- ⑦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

제5조 (인체 및 동물실험)

- (1) 인체 임상 연구에 대한 논문은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.
 - 실험 절차가 연구 수행 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2004년에 개정된 헬싱키 선언(Helsinki Declaration)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.
 - 무작위 임상 실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저자는 CONSORT Statement에 언급된 체크 리스트를 언급해야 하며 임상 프로필을 제공해야 한다[1].
 - 대조군과 실험군의 나이, 몸무게, 성, 인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(2) 동물 실험에 대한 논문은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.
 - 실험 절차가 연구 수행 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실험 동물 보호 및 사용에 대

한 가이드(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)에 부합하는지 명시해야 한다[2].

- 동물을 희생시킨 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.
- 동물의 품종, 제공한 회사를 명시해야 한다.

참 고 문 헌

[1] C. Begg, M. Cho, S. Eastwood, R. Horton, D. Moher, Olkin, R. Pitkin, D. Rennie, K. F. Schutz, D. Simel, and D. F. Stroup, Improving the quality of reporting of randomized controlled trails, *J. Am. Med. Assoc.*, **276**(8), 637 (1996).

[2]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, National academy press, Washington, D.C. (1985).

제6조(윤리위원회)

- (1)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 화장품학회 내에 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둔다.
- (2) 학회의 선임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, 위원회의구성, 임기 등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(3)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위원회의 역할)

연구윤리에 관련된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- (1) 학회지의 출판, 관련 논문(원저, 증례보고, 단신보고, 중설 등),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(2) 학회지 발표 논문의 ‘위조’, ‘변조’, ‘표절’, ‘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’, ‘중복게재’ 등에 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.
- (3) 학회 회원들의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검토,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.

제8조(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)

- (1)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

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(2)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.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,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- (3)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,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.
- (4)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,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(5)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.
- (6)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,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.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, 이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.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(제1저자, 교신저자)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.
- (7) 학회 회원의 연구 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, 이사회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① 경고, ② 회원 자격 정지, 혹은 ③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.

제9조

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’,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(www.kamje.or.kr)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‘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’과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02일부터 시행한다.